

〈일반논문〉

## 연산군代 禁標의 설치와 도성 경관의 변화\*

신 동 훈 \*\*

〈목차〉

- I. 머리말
- II. 후원 영역의 확대와 영향
  - 1. 도성 변화의 기초 : 가리기와 철거
  - 2. 가옥 철거 및 출입 금지의 시작
- III. 기형적 도성의 탄생
  - 1. 금표의 설치와 확대
  - 2. 內禁標와 궁궐의 확장
- IV. 맺음말 : 사회 불안과 中宗反正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연산군 대 시행된 도성 내 금표 설치와 그로 인한 경관 변화를 살펴 보았다. 연산군은 지대가 높은 곳에서 후원을 내려다보거나, 후원의 소리를 듣고 외부에 전파하는 행위를 막고자 했다. 따라서 후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과 후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의 출입을 금지하고 건물을 철거했다.

이러한 기초는 갑자사화를 전후하여 급격히 확대되었다. 후원과 인접한 도성

\* 심사위원의 지적을 참고하여 제목을 수정했다. 세밀하게 논문을 읽어 준 심사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 가톨릭대학교 강사

의 동북부 지역부터 시작된 출입금지 및 강제철거는, 도성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연산군은 출입금지 및 강제철거 지역에 금표를 설치했다. 금표 설치는 출입금지 및 강제수용·철거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금표가 설치된 지역은 사실상 궁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연산군의 유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중종반정이 일어날 즈음 도성은 청계천 주변의 낮은 지대, 오늘날 퇴계로와 인접한 지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금표로 편입되었다.

금표가 설치된 지역은 연산군의 자의적 판단 하에 거주 및 건물 보존이 이뤄졌으며, 그 외는 강제수용 및 철거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새로운 건물 및 담장 축조 등의 토목공사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성을 떠났고, 반대로 많은 지방 사람들이 토목공사의 인력으로 차출되어 상경했다. 도성의 경관은 급격히 변했고, 도성 내의 거주 및 유동 인구 또한 빠르게 변했다.

연산군 재위 후반부의 도성 거주민들은 앞날을 예상할 수 없었다. 오늘 도성에 살고 있지만, 내일은 집이 강제 수용되어 철거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감을 안고 살아감과 동시에, 토목공사에 차출된 사람들과 취홍원 등으로 뽑힌 사람들의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마주해야 했다. 사회 전반에 자리한 불만은 결국 反正의 추동력이자 승인의 요인으로 작동했던 것이었다.

#### □ 주제어

금표, 도성 경관, 후원, 중종반정

## I. 머리말

연산군 在位期는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일반적으로 15세기를 거치면서 축적된 조선의 정치·사회 문화는 성종 대에 완성되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뒤이어 연산군의 폐정이 나타났고, 그 결과는

中宗反正으로 귀결되었다. 연산군 대에 벌어진 두 번의 土禍와 연산군이 행했던 淫行·奇行 등은 연산군과 그 재위기를 폭군이 통치했던 폐정의 시기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인식은 중종반정으로 인해 廢朝로 규정되면서 기정사실화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산군 재위기에 대한 연구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되는데, 무오·갑자 사화에 대한 연구,<sup>1)</sup> 반정의 원인에 대한 연구, 폭정의 양상에 대한 연구 등이다. 이 가운데 반정의 원인과 폭정의 양상은 사실상 동일선상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연산군의 폭정이 곧 반정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연산군의 폭주 원인을 개인적인 원한, 이른바 폐모 윤씨에 대한 그리움 등 그의 감정적인 데서 벗어나 정치구조적인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연산군은 정치·사회 운영의 작동 기제로서 모든 권위를 불식시키고 오로지 국왕의 권위를 유일무이한 정치·사회 작동 기제로서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sup>2)</sup> 연산군의 폭정을 연산군 개인 보다는 당시 정치 구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도된 것으로, 성종과 중종 대의 정치 문화를 이어줄 수 있는 시각이라 생각한다. 또, 연산군대 공물 수취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연구도 시도되었다.<sup>3)</sup> 이는 연산군의 사치와 국가 예산의 변동을 연동하여 접근한 것으로 반정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상의 연구들은 소재는 다르지만 연산군의 폭정과 그로 인해 반정으로 이어졌다는 서사로 귀결된다.

반정은 중종 대의 정치 뿐 아니라 이후 정치 양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 
- 1) 사화는 사립파의 성장에 따른 훈구파의 대응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삼사의 부상에 따른 권력 구조의 변동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연구가 제기되었다(김범, 『사회와 반정의 시대』, 역사비평사, 2007; 『연산군』, 글항아리, 2010).
  - 2) 최선혜, 「연산군 시대 先王 世祖와 成宗에 대한 기억과 충돌」, 『서강인문논총』 35, 2012; 윤대식, 「연산군(燕山君), 권력과 폭력 간 불안한 경계 짓기의 실패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1, 2017.
  - 3) 소순규, 「燕山君代 貢案改定の 방향과 辛酉貢案의 특징」, 『사학연구』 134, 2019.

정치적 변동이 컸던 사건이었던 만큼, 그동안 연산군 시기를 다룬 연구는 주로 정치사 영역에서 반정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이뤄졌다.<sup>4)</sup> 그런데 반정이 비록 정치 영역에서 이뤄진 것이었지만, 그 ‘완성’은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연산군 폐위 이후 연산군 복위 움직임은 전무하며, 오히려 다양한 지역에서 ‘반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5)</sup>

이는 연산군에 대한 불만이 사회 전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6)</sup> 특히 그 중에서도 도성 민의 民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전근대 도성은 곧 국가의 핵심으로 국가의 정당성 및 지배 이념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공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산군의 대표적인 폐정이라 할 수 있는 금표 설치를 통해 당시 도성 민이 처해 있던 상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sup>7)</sup>

반정 첫날 혁파된 금표는 연산군의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폐정이었다.<sup>8)</sup> 연산군 대에 금표는 도성 내부와 경기에 설치되었는데, 북쪽으로는

4) 김돈, 『조선중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9; 김범, 앞의 책, 2010.

5) 반정 즈음해서 전라도와 경상도 등지에서 각각 거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燕山君日記』 권63, 연산 12년 9월 기묘). 이러한 것을 보면 연산군에 대한 불만은 전국적이었으며, 그 수위 또한 폭발 직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손균익, 「연산군 대 亂言 사건을 통해 본 사회 기층의 정치의식」, 『민족문화연구』 73, 2016.

7) 송용섭은 당시 정치 구도 속에서, 연산군의 파행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연산군의 파행을 기존(특히 성종)에 만들어 진 정치 관행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하면서, 연산군이 깨뜨리고자 했던 것들이 당시 정치 문화였다는 것을 반증했다(「연산군 초반 정치적 갈등에 대한 구조적 접근」, 『인문과학연구』 20, 2015; 「연산군의 의례 및 가치 체계에 대한 파괴와 도덕적 권위로부터의 탈피」, 『사립』 68, 2019). 그의 연구는 기존 연구 경향과 달리 연산군의 파행이 당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8) 『中宗實錄』 권1, 중종 1년 9월 무인. 금표 설치는 일정한 영역에 대해 가옥 철거, 출입 금지가 이뤄지고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출입 금지 지역임을 알리기 위한 표

파주~포천~양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김포~금천~용인~양수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인해 주로 경기 지역의 금표가 주목받았다.<sup>9)</sup> 그런데 금표는 궁의 후원 확대를 위해 도성 내 衙門 및 民家를 철거하고 그 지역에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기조가 도성 밖 성저십리 지역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사실상 유희를 위한 사냥터와 다름없는) 강무장의 확대가 맞물리면서 금표 설치 지역이 확대된 것이었다. 즉 금표는 성저십리를 포함한 도성과 경기에 설치되었던 것이며, 그 설치 양상은 도성 내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연산군대 금표 설치의 도성 내부의 변화, 즉 도성 내부의 민가 철거 및 출입 금지와 그에 따른 변화부터 고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10)</sup>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성과 성저십리의 금표 설치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성 경관의 변화 및 민심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연산군의 후원 확대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도성의 지형적 특징상 창덕궁 후원보다 성균관 북쪽이 더 높은 지대였기 때문에, 이곳의 人民들은 후원을 포함한 도성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연산군은 이것을 문제 삼으며 후원을 확대해갔다. 여기서부터 도성의 금표는 설치·확대되어갔다. 이러한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

---

식이었다. 대략적인 순서는 가옥 철거, 출입 금지, 금표 설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3개는 혼용되어 어느 하나가 시행되면 나머지 2개도 수반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본고는 금표 설치가 가옥 철거, 출입 금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금표를 지칭하고자 한다.

9) 鄭東一, 「燕山君 禁標碑 研究」, 『한성사학』 8, 1996.

10) 도성 내부 및 경기 지역의 금표 설치 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단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바 있다(김범, 앞의 책, 2010; 나영훈, 「조선초기 昌德宮의 경영과 위상 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1). 그러나 전자는 그 확대 과정과 그로 인한 피해 양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데에 집중했으며, 후자는 중종반정의 원인으로 연산군대 무분별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된 토목·영선을 꼽았지만 창덕궁을 중심으로 서술된 측면이 강하다.

옥 철거 및 출입 금지 지역의 실시를 위한 연산군의 논리 변화도 알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가옥 철거 및 출입 금지 지역의 급격한 확대 과정과 금표 설치의 다름 것이다. 갑자사화를 전후하여 가옥 철거 및 출입 금지 지역 확대가 급격히 이뤄졌고, 이는 성저십리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민들에게 출입 금지 구역을 인식시키기 위해 풋말·비 등을 세우기 시작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금표 설치로 상징되는 후원 및 사냥터 확대, 민가 철거 및 강제 이주, 출입 금지 등의 조치에 대한 민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1)</sup> 연산군의 금표 설치가 도성의 경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러한 도성의 경관 변화는 도성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통해

11) 이와 관련하여 ‘공개 대본’과 ‘은닉 대본’ 개념이 주목된다(제임스 C 스캇,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후마니타스, 2020).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사례로 만들기 위해 그것이 피지배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이것이 곧 지배자들의 공개 대본이다. 피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를 순응하는 척한다. 이것이 피지배자들의 공개 대본이다. 이러한 과정과 대조적으로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자신들이 강조했던 지배이데올로기와 상반되는 행동들을 하는데, 이것은 지배자들의 은닉 대본이다. 또 피지배자들도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지만 지배자들의 감시를 피해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곤 하는데, 이것이 피지배자들의 은닉 대본이다. 『燕山君日記』의 후반부는 연산군의 일방적 傳敎와 신료들의 무조건적인 순응으로만 점철되어있다. 이는 연산군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신료들이 공개 대본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관들의 기록 부실 또한 연이은 사화, 연산군의 『成宗實錄』 확인 및 『承政院日記』 검토에 의한 처벌 때문에 기록이 부실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사관들도 공개 대본에 충실하여 오로지 사실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그러한 면서도 관료들은 자신들만의 은닉 대본을 써내려가고 있었을 것이다. 즉 연산군 재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산군의 폭주 뿐 아니라 그러한 연산군에 대응하는 관료(그리고 인민들까지)들과 그들이 가졌을 불만 등에 대해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종반정이 관료를 넘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지지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치 영역에 집중된 연산군대 연구 경향에 새로운 자극이 되길 기대한다.

## II. 후원 영역의 확대와 영향

### 1. 도성 변화의 기초 : 가리기와 철거

연산군은 후원의 유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sup>12)</sup> 기본적으로 후원은 연산군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대가 높은 곳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후원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연산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대가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 볼 수 없도록 궁궐의 담장을 높이고, 후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의 민가를 철거하도록 했다.<sup>13)</sup> 그러나 신료들이 中朝에서도 문묘가 여염 가운데 있으며, 폐비 윤씨의 遷墓 중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자, 연산군은 철거를 3년간 유예시켰다.<sup>14)</sup> 연산군이 담장을 높이라고 지시했던 곳은 창덕궁 후원 동쪽 끝과 성균관 서쪽 끝이 만나는 곳으로, 그 사이에 흐르는 川을 세조가 창덕궁으로 편입시켰다가 성종 대에 泮水라는 이유로 성균관에 돌려줬던 곳이었다.<sup>15)</sup>

12) 왕이 거동할 때 觀光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요란한 행동만을 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燕山君日記』 권21, 연산군 3년 2월 병자), 연산군은 자신의 사적 영역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3) 『燕山君日記』 권21, 연산 3년 1월 병오; 갑인.

14) 『燕山君日記』 권21, 연산 3년 1월 갑인; 신유.

15) 『世祖實錄』 권30, 세조 9년 2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成宗實錄』 권53.

담 개축 및 민가 철거가 막히자 연산군은 ‘寶敬堂을 수리[修葺]하는 군인들이 大內를 환히 들여다본다.’라는 이유로 후원에 장막을 치고, 창덕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의 출입을 금지시켰다.<sup>16)</sup> 그리고 『경국대전』의 ‘궁궐 담 100尺 안에는 人家를 짓지 못한다.’는 법을 근거로 창덕궁 담 100자 안의 정업원·성균관 근처 人家를 헐고 이들에게 空地를 주도록 했고, 높은 곳에 있어 후원을 내려다본다면 廣智門 경비 담당의 쌓을 낮은 곳을 물리도록 했다.<sup>17)</sup>

연산군 3년 6월 선정전 기둥에 벼락이 쳤다.<sup>18)</sup> 이로 인해 연산군은 中外에 구언함과 동시에 긴요한 營繕을 제외한 모든 영선을 정지하고, 외부인들이 후원을 보지 못하도록 拱辰門·靑陽門·永康門 등 후원 영역에 둘러쳤던 가시나무를 철거하는 등 벼락으로 인해 자신이 벌였던 행동들을 철회했다.<sup>19)</sup> 재변에 대응하는 前例를 따르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연산군의 행동은 통제 가능한 범주에 속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0)</sup> 그러

---

성종 6년 3월 무오. 문제가 된 川은 흥덕동천이며 西泮水로 불렸던 물줄기이다. 성균관 쪽이 창덕궁 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 16) 『燕山君日記』 권22, 연산 3년 3월 갑자; 『燕山君日記』 권22, 연산 3년 4월 기축.  
 17) 『經國大典』 兵典 禁火; 『燕山君日記』 권23, 연산 3년 5월 기미; 갑자.  
 18) 『燕山君日記』 권24, 연산 3년 6월 정유.  
 19) 『燕山君日記』 권24, 연산 3년 6월 기해의 기록에는 拱辰門·靑陽門·永康門 만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나, 후원의 울타리를 철거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燕山君日記』 권25, 연산 3년 7월 경자), 후원 영역 전반에 가시나무를 둘러친 것으로 판단된다.  
 20) 조선 정치 문화의 특징은 왕의 군주권 남용을 위한 여러 제어 장치를 두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왕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 역사, 민심을 대신하여 왕에게 경고하는 것이라는 災變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 왕도 國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왕·신료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신동훈, 「조선 초기 국왕의 法 인식을 통해 본 對民 인식」, 『백산학보』 118, 2020, 390쪽). 그러나 연산군은 왕의 국법 준수 요구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 6개월 후인 연산군 4년 2월 뇌전이 발생했음에도 신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책을 말하도록 했던 것 외에 별다른 행동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사직서 제조 노사신·구수영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 담장과 연이은 인가를 철거했다.<sup>21)</sup>

같은 해 윤7월 무오사화로 인해 대간의 간쟁이 축소되고 대신들이 연산군의 뜻에 동조하게 되면서, 연산군은 자신의 뜻을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연산군은 후원에 설치한 울타리 대신 한계를 정하여 담장을 쌓고, 후원의 永康門으로부터 靑陽門까지 長廊을 지어 응방으로 사용하고,<sup>22)</sup> 배고개[梨古介]를 막도록 했다.<sup>23)</sup> 그리고 곧이어 광지문의 군보를 安逸院의 북쪽으로, 창경궁 東牆 밖 水口에 있는 군보는 성균관 북쪽으로 옮기고, 수직 군사들로 하여금 대궐 뒤로 왕래하는 사람들을 금지하도록 했다.<sup>24)</sup> 이러한 조치들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후원을 내려다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었다.

연산군 6년 2월에는 宮人이 피병하는 곳이니 인가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疾病家를 기준으로 100보 안의 인가를 철거하도록 했다가 곧 명을 철회했다.<sup>25)</sup> 그런데 얼마 후 내응방 소속의 매 조련사가 양현

21) 『燕山君日記』 권29, 연산 4년 6월 기묘.

22) 영강문부터 청양문까지의 장랑 축조는 그 전에 시행했다가 중지했던 것을 다시 시행한 것이었다(『燕山君日記』 권16, 연산 2년 7월 정미; 『燕山君日記』 권25, 연산 3년 7월 신축).

23) 『燕山君日記』 권32, 연산 5년 2월 신해. 배고개는 梨峴으로 현 인의동에 있었던 고개로 추정된다.

24) 『燕山君日記』 권32, 연산 5년 2월 병진. 안일원은 정업원의 다른 칭호이다(『明宗實錄』 권4, 명종 1년 7월 신사; 계미). 당시 정업원은 현 종로구 원서동에 있었다. 이 조치는 창덕궁 후원 뒷길로 현 혜화동에서 가회동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이었다(『燕山君日記』 권37, 연산 6년 3월 기미).

25) 『燕山君日記』 권36, 연산 6년 2월 6일 경인; 신묘. 질병가는 神武門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계묘).

고 북쪽 고개에 출입한 것을 빌미삼아 정업원과 성균관 북쪽 고개에 새로 지은 가옥 중 대궐을 내려다보는 가옥을 돌아오는 가을까지 철거하도록 했으며, 도성 사방 산허리와 산등성이의 가옥 신축을 엄금하도록 했다.<sup>26)</sup>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성균관 서쪽과 후원 담 아래, 창덕궁 서쪽 금호문 담 아래와 경복궁 담 아래 지역의 가옥 신축을 금지했다.<sup>27)</sup>

후원을 내려다보는 곳의 가옥 철거나 궁 인근 및 산 중턱 지역 신축 금지에 그쳤던 조치들은, 연산군 8년 즈음부터 지대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궁 인근 지역의 가옥 철거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대상 지역은 후원 동쪽, 즉 성균관 인근부터였다.

연산군은 성균관 서쪽 반수 및 정업원 동쪽 지역의 궁성 인근 가옥들의 철거를 서두르도록 하고, 추가로 대성전 북쪽 언덕 지역의 가옥들도 철거하도록 했다. 그리고 철거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도성문 밖 혹은 반수 근처의 다른 땅으로 바꿔주거나 전례에 따라 보상해주고, 철거한 땅에는 푯말을 세우고 거주하던 사람의 이름을 써서 사람들의 점유를 막도록 했다. 또, 정업원 근처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정업원 서쪽으로 이주하도록 했으며, 앞서 지시했던 산 중턱 가옥을 서둘러 철거하도록 했다.<sup>28)</sup> 그러나 의정부와 사헌부가 도성 안에는 대신 지급해 줄 땅이 부족하며, 이미 가옥이 철거된 인민들이 초막에서 거주하고 있고, 天變 또한 자주 일어나고, 中朝도 궁과 太學에 인접하여 가옥이 있다며 반대하자, 연산군은 疫疾이 궁으로 번질까 우려한 것이라고 하면서 궁성과 인접한 가옥 철거는 멈추고 이미 철거한 가옥 수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했다.<sup>29)</sup>

이때 대간은 왕자들에 대한 경기의 나뭇갓[柴場] 불하에 대해 4~5개

26) 『燕山君日記』 권37, 연산 6년 3월 기미; 갑자.

27) 『燕山君日記』 권38, 연산 6년 8월 을유.

28) 『燕山君日記』 권42, 연산 8년 2월 기미.

29) 『燕山君日記』 권42, 연산 8년 2월 병인; 무진.

월에 걸쳐 간쟁하고 있었다.<sup>30)</sup> 영의정 한치형·좌의정 성준·우의정 이극균은 時弊 10조목을 올리고, 나뭇갓 지급 문제를 추가로 언급하며 ‘백성이 이반하면 그 나라는 나라일 수 없으니 민심을 살피야 한다.’는 취지의 直言을 올렸다. 대신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자 연산군은 대신들의 말이 옳다면서 왕자·녀들에게 나뭇갓을 주지 말라고 했다.<sup>31)</sup> 연산군이 가옥 철거를 멈추고 나뭇갓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은, 의정부 대신들이 백성들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때부터 연산군이 왕토 사상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私工을 부릴 때, 경창에서 내수사로 쌀을 옮길 때, 경기의 금표를 확대할 때, 私婢에게 음약을 가리키려 할 때, 관료들에게 品從을 강제할 때 연산군은 온 나라에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sup>32)</sup> 연산군은 신료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을 찾았다. 그런데 대신들이 법이 아닌 古典의 사상을 들고 나오자 연산군 또한 古典의 사상으로 대응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는 법이 아닌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사상을, 그것도 왕토 사상을 근거로 들자 신료들은 이에 대응할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sup>33)</sup> 연산군의 행보는 거침없어졌다. 연산군은 궁성의 사방 근처와 산중턱의 가옥 신축 금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고, 木覓山에 올라간

30) 『燕山君日記』 권41, 연산 7년 10월 정미; 『燕山君日記』 권41, 연산 7년 12월 을축; 정묘; 기사; 『燕山君日記』 권42, 연산 8년 1월 병자; 『燕山君日記』 권42, 연산 8년 2월 기유; 임자; 『燕山君日記』 권43, 연산 8년 3월 임진.

31) 『燕山君日記』 권43, 연산 8년 3월 정유. 당시 민심 및 사회 분위기는 본고 4장 참조.

32) 『燕山君日記』 권45, 연산 8년 8월 계묘; 『燕山君日記』 권48, 연산 9년 2월 임자;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계유; 『燕山君日記』 권56, 연산 10년 10월 경오; 『燕山君日記』 권60, 연산 11년 10월 계축.

33) 사헌부는 연산군의 왕토 사상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해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기묘).

사람을 잡아다 장을 치면서 도성을 둘러싼 산의 출입 금지를 예고했다.<sup>34)</sup>

## 2. 가옥 철거 및 출입 금지의 시작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한 데서 비롯한 후원 가리기, 즉 후원과 인접한 가옥 철거, 후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의 가옥 철거 및 통행금지 조치 등은 갑자사화 즈음하여 확대되기 시작했다. 가옥이 철거된 공간은 궁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넓어진 궁과 인접한 가옥 및 그 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의 지역에 대한 철거 및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이로 인해 도성의 모습은 빠르게 변해갔다.<sup>35)</sup>

연산군 9년 11월 을축일 연산군은 승정원에 ‘누가 경들의 집을 내려다 본다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하면서 大內를 내려다보는 곳의 인가 철거 여부를 승정원에 물었고, 승지들은 그런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답했다. 승지들의 동의를 얻은 연산군은 長廊을 세워 출입을 금했던 梨古介에 문을 내고 자신이 거동할 때만 열도록 했다.<sup>36)</sup> 또, 궁 서쪽으로는 정업원, 동쪽으로는 성균관 이하까지 집을 철거하도록 했는데, 철거 대상이 된 사람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자 철거 이유를 효유하고, 집을 4등급으로 나누어 각 면포 50·30·15·10필씩을 주도록 했다.<sup>37)</sup> 그리고 이들이 거주할

34) 『燕山君日記』 권45, 연산 8년 8월 을사; 『燕山君日記』 권46, 연산 8년 10월 경신.

35) 궁 안쪽이라고 해서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연산군은 傳漏所와 警守所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는데(『燕山君日記』 권50, 연산 9년 6월 을사), 궁에서 숙직하는 군사들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6)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을축.

37)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정묘; 무진. 이때 철거 대상이 된 가옥의 수는 창덕궁 後苑 동쪽 담장 밑 金綴文 등 14인의 집 및 경수소 하나, 서쪽 담장 밑의 長命 등 62인의 집 및 경수소 넷, 舍春苑 남쪽 담장 밖 韓繼善 등 14인의 집으로, 총 80인의 집 및 경수소 5곳이었다.

수 있는 곳을 병조·공조·한성부로 하여금 알아보게 했으며, 돌아오는 봄까지 스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예 기한을 주었다.<sup>38)</sup>

동년 11월 기사일에는 소격서로 향하는 정업원西洞 북쪽 고개에 담을 쌓아 雜人들의 통행을 막았고, 정업원 동쪽 언덕에서 星宿廳 북쪽 고개까지 아울러 표를 세워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곳에서 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했다.<sup>39)</sup>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백성들의 원망이 많으면서 예전부터 있어왔던 집들은 제외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연산군은 법대로 할어야 한다면서 거절했고, 선왕의 후궁이 있다는 이유로 慈壽宮·壽城宮과 가까운 집 또한 철거하도록 했다.<sup>40)</sup>

동년 11월 신미일에는 연산군은 성균관의 聖井을 이전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성균관 이전을 예고한 것이었다. 사헌부와 의정부는 가옥의 연이은 철거와 성균관 聖井 이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세조와 성종 대에도 철거하지 않았으며, 백성의 원성과 유생들의 상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 자수궁과 수성궁은 경복궁·창덕궁과 다르다면서 철거를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41)</sup>

이러한 반대에 대해 연산군은 도성에 빈 땅이 없어 집을 산 중턱까지 짓게 되었고 이는 궁을 내려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는 부득이하며, 왕보다 孔子를 높일 수 없으며, 관료들의 집이 철거당하기 때문에 백성의 원성이 높다는 것을 핑계 삼는 것이라면서, 가옥 철거와 聖井 이전의 뜻을 바꾸지 않았다.<sup>42)</sup> 오히려 연산군은 동소문 밖 언덕에 경수소를 설치해 군

38)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기사.

39)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기사.

40)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신미.

41)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임신; 계유; 갑술; 정축; 기묘; 계미; 을유. 연산군은 자수궁과 수성궁은 선왕의 후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 높이는 것은 곧 선왕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경진).

42)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계유. 같은 날 연산군은 演窟寺를 철거했다.

사를 배치하고, 백악산·인왕산·사직산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경수소를 설치하여 출입하는 사람을 단속하도록 했다.<sup>43)</sup> 출입 금지 지역이 북악산과 동대문 부근의 언덕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궁 내부 구조 변경도 진행되어 紫門軍器寺 서쪽부터 도총부까지, 위장소 北所에서 曜金門까지 담장을 축조하도록 했다.<sup>44)</sup>

연산군은 경복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을 조사하도록 했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담은 도면을 내리면서 창덕궁의 예를 따라 철거하도록 했다.<sup>45)</sup> 여기에 더하여 성균관 북쪽 산에서부터 낙산[駝駱山]까지 출입을 금지했다.<sup>46)</sup> 같은 달 13일에는 목멱산 등의 성황당 출입을 금지했고, 낙산 밑, 창덕궁 요금문 밖, 창덕궁 돈화문과 단봉문 사이에 인접한 지역의 약 100여 명의 집을 그믐까지 철거하도록 했다.<sup>47)</sup> 이후 연산군은 살한리[沙乙閑里]에서 武溪洞, 藏義洞에서 살한리로 이어지는 길을 막았는데,<sup>48)</sup> 이로 인해 북악산은 사람들의 출입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한편, 연산군은 ‘張淑容의 집이 화재 우려가 있다.’면서 그 이웃한 인가를 헐어 주위를 넓히고, 該司에서 보상해 주도록 했다.<sup>49)</sup> 이에 대해 사헌

---

연산군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대신들은 철거 대상이 된 백성들에게 보상을 주는 쪽으로 대응 방안을 선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갑술).

43)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계유; 갑술. 동소문 언덕에 설치했던 경수소는 그 군사들이 궁을 내려다본다는 이유로 곧 훼손시켰다(『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계미). 이런 모습은 가옥 철거와 출입 금지 조치가 계획적이었기보다는, 궁과 인접한 곳과 궁을 내려다보는 곳의 가옥을 철거하고 출입 금지 시킨다는 기조 아래 매 순간마다 즉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44)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갑술.

45)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신미; 을해.

46)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을해.

47)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병자; 경진.

48)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 11월 계사. 이는 현재의 서울 내부순환도로에 해당 하는 길로서 정릉동·미아동에서 부암동·신영동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이었다.

부가 諫하자 연산군은 陵上之風을 없애야 한다면서 사헌부 관원을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도록 했고, 사헌부가 그러한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승정원 또한 잘못이라고 했다.<sup>50)</sup> 며칠 후 연산군은 君臣의 分別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세좌·홍귀달 등 대신들을 처벌했고,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린 일을 상고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추렸다.<sup>51)</sup> 이후 ‘追論하여 죄주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연산군의 물음에 승정원이 ‘允當하다.’고 답하면서 갑자사화 정국으로 변해갔고, 신료들은 연산군이 하려는 일마다 ‘允當하다.’고 답했다.<sup>52)</sup>

聖井 이전으로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성균관 이전은, 연산군이 후원과 성균관이 가까워 후원의 소리가 성균관까지 들린다는 지적을 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유생들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세간에 전파한다는 것이었다.<sup>53)</sup> 이에 따라 성균관 서재 바깥에 鹿角柵을 세웠지만,<sup>54)</sup> 얼마 못가 성균관을 이전시켰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이 추진하는 일에 반대하는 신료가 사라지면서 인가 철택 및 금지 구역 확대는 성균관 이전을 시작으로 官署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담장 추가 설치 및 궐내각사 이전 등 궁 내부 구조 변경 또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sup>55)</sup>

49) 『燕山君日記』 권52, 연산 10년 3월 기사.

50) 『燕山君日記』 권52, 연산 10년 3월 계유.

51) 『燕山君日記』 권52, 연산 10년 3월 정축; 『燕山君日記』 권52, 연산 10년 4월 임진.

52) 『燕山君日記』 권53, 연산 10년 5월 신묘. 제임스 C.스콧은 “권력이 보다 자의적으로 행사될수록 피지배 집단의 공개 대본은 정형화되고 의례화된 모습을 띠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다(앞의 책, 2020, 29쪽). 이를 연산군 재위기에 대입시켜보면, 연산군이 권력을 남용할수록 관료와 인민들의 대응은 더욱 정형화되고 의례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연산군의 무리한 행동에 모두 긍정적인 담만 반복한 관료들의 대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겉으로는 “예”라고 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불만이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다.

53) 『燕山君日記』 권53, 연산 10년 5월 병신.

54) 『燕山君日記』 권53, 연산 10년 5월 경자.

55)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6월 경오.

### Ⅲ. 기형적 도성의 탄생

#### 1. 금표의 설치와 확대

후원이 내려다보이는 곳의 인가를 헐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던 연산군의 조치는 평지로 확대됨과 동시에 궁 내부 구조 변경으로 이어졌다. 먼저 修理都監으로 하여금 양현고 위로부터 도성 아래까지의 인가를 철거하고, 宣仁門부터 肅章門까지 御路를 설치하도록 했다.<sup>56)</sup> 또, 연산군은 성균관洞의 철거할 인가를 추려냄과 더불어 원각사를 훼손하여 성균관을 원각사 자리로 이진하고, 사삼시·흥덕사도 함께 철거하도록 했다. 그리고 舍春苑부터 사삼시 건너편을 걸쳐 동소문까지 담을 쌓고, 사삼시 石橋에 문을 만들어서 대내를 바로 보지 못하게 했고, 흥계원의 집부터 북쪽으로 齊安大君의 집 북단까지 표를 세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질병가부터 昭敬殿까지도 제사 때를 제외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가옥 철거 대상이 된 사람은 스스로 집을 헐어야 했으며, 따르지 않는 사람은 수리 도감으로 하여금 독촉해서 헐도록 했다.<sup>57)</sup> 연산군의 일방적인 주도 하에 신료들은 명 사신의 알성을 우려할 뿐, 별다른 반대 및 우려를 표하지 않았다.<sup>58)</sup>

다음날 연산군은 성균관 이건을 서두르기 위해 도제조를 차출하는 한

56)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신묘; 을미. 이때 승정원 이진도 함께 피했지만, 마땅히 옮겨갈 만한 공간이 없었기에 논의가 미뤄졌다.

57)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무술.

58) 연산군은 茅屋을 가설하여 공자의 신위를 옮겨두자고 했는데 신료들의 의견에 따라 태평관으로 옮기도록 했고, 성균관 이건을 서두르기 위해 도제조를 별도로 차출했다. 공사 기간 동안 신위를 안치할 임시 공간을 논의한 것으로 보아 원각사와 성균관을 동시에 철거하도록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편 正과 邪를 한 곳에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성군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했다. 이견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館員 및 유생들은 신위를 따라 태평관으로 옮기자고 했다.<sup>59)</sup> 그러자 연산군은 원각사 철거를 정지시켰다.<sup>60)</sup> 신위와 관원·유생들의 태평관으로 이전이 결정되자마자 원각사 철거를 멈춘 것으로 보아 애초의 목적은 성군관 관원 및 유생의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위와 사람들(관원·유생·백성들)이 떠난 빈 공간의 확보는 손쉬웠다. 연산군은 직접 小轎를 타고 동소문 안 흥덕동·사십시洞·성군관洞을 돌아보면서 철거할 인가를 정했다. 그리고 같은 날 소격서·藏義門 안쪽도 직접 둘러보겠다고 하면서, 설치했던 목책을 철거하고 담장을 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출입 금지 지역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했다. 또, 낙산[駝駱山] 아래 목책을 설치하여 올라가지 못하게 했고, 當直廳을 僕射廳 앞으로 옮겨 짓되, 땅이 협소하면 인가를 헐어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sup>61)</sup> 이때 철거된 인가는 사십시洞 里門부터 흥덕사洞 어귀까지 70곳, 흥덕사洞 어귀부터 동소문 북쪽까지 23곳, 함춘원 담 밖부터 사십시 남쪽 돌담까지 50곳, 총 143곳이었다.<sup>62)</sup> 연산군은 철거당하는 인가가 가없다면서 쌀·베 등을 주라고 했지만 끝내 주지 않았고, 동시다발적인 토목공사로 인해 役夫가 부족하자 ‘유생들도 뒷날 임금을 섬길 자’라는 이유를 들어 담장

59) 성군관이 옮겨갈 곳으로 동대문 밖 加恩君家洞이 제기되었다가(『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경술), 이 곳 또한 유생들이 인근의 높은 곳에 올라 대궐을 내려다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城南 아래로 옮기도록 했고(『燕山君日記』 권56, 연산 10년 10월 을해), 이후 典牲署洞(현 용산구 후암동 일대)로 정해졌다(『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1월 신해).

60)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기해.

61)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경자.

62)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신축. 며칠 후 興德寺는 圓覺寺로 옮겼는데, 이는 그 흥덕사 내에 있는 중들을 원각사로 옮긴 것으로 생각된다(『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계묘).

쌓는 일에 동원했다.<sup>63)</sup> 이 조치로 인해 사실상 도성의 동북부 지역의 절반 이상이 궁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연산군은 소격서·藏義門 안쪽을 둘러보기 위해 해당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내보냈고, 도성 내 大路의 통행을 일시 금지했다. 그리고 경회루·사정전·합문 등 경복궁 내에 입직하는 군사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神武門을 개방했다.<sup>64)</sup> 다음날에 연산군은 서쪽 담장 축조 범위를 직접 둘러보고 난 후, 조지서를 홍제원 위로 옮겨 짓고 그 근처 인가를 모두 철거시켰고, 장의사의 증을 모두 내쫓고 장의사동 끝을 한계로 하여 목책을 설치하도록 했다.<sup>65)</sup>

경복궁 서북쪽 지역의 인가를 철거하면서, 기존에 출입을 금지시켰던 북악산 길을 좀 더 위로 올려서 홍제원부터 승가寺 서쪽까지, 승가사부터 살한리[沙乙閑里=沙乙河里] 지역까지 돌에 새겨 표를 세우고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켰다.<sup>66)</sup> 연산군은 성균관 근처 고지대의 가옥을 철거한 후 평지부터 禁標를 세우도록 했었다.<sup>67)</sup> 이후 연산군은 가옥을 강제수용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킨 지역에 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63)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신축.

64)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신축. 신무문 개방은 경복궁 북쪽 지역이 사실상 궁의 영역으로 편입된 상황에서, 북악산을 편리하게 오고가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65)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임인. 며칠 후 장의사 승려들은 삼각산 內外의 절로 옮겨가도록 했다(『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을사).

66)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계묘. 구체적으로는 홍제원으로부터 동소문 밖 多野院까지였다.

67) 『燕山君日記』 권53, 연산 10년 윤4월 기묘. 연산군이 가옥을 철거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한 금표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당시 금표 설치를 임사홍이 인도했다는 史論이 있다(『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을축). 이는 아마도 임사홍이 연산군의 기행을 가장 충실히 따랐었기 때문에, 금표 또한 임사홍이 인도했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燕山君日記』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금표 설치하는 연산군이 처음 제기했다고 생각한다.

또, 북악산에서 내불당을 거쳐 남산에 이르기까지 산등성이에 지은 집을 모두 철거하도록 했는데, 남산이 언급되면서 청계천 이남으로 철거 영역 확대 조짐이 나타났다. 연산군은 자신이 직접 둘러보겠다고 하면서 宮城에서 100尺 떨어진 곳에 표를 세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충훈부~상림원~경복궁~내불당에 이르는 지역, 남산 下麓과 남산 下麓에서부터 낙산[駝駱山] 등성이까지의 인가를 철거하고 담을 쌓도록 했다. 또, 화약고·소격서는 창의문 밖으로 이건하고 그 너머에 있는 산까지 금표로 편입하겠다고 하면서 한성부·병조·공조가 함께 가서 살펴보도록 했다.<sup>68)</sup> 이때 철거된 집들의 구체적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충훈부의 위치로 보았을 때, 현 종로구 관훈동 지역부터 울곡로에 이르기까지의 인가가 철거되고 궁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략 현 퇴계로 이남과 남산 사이, 남산 줄기를 따라 동대문~낙산으로 이어지는 높은 지대의 가옥 또한 철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성 동쪽은 청계천을 끼고 있는 저지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다수 지역의 가옥이 철거된 것이었다.

이러한 도성 내부의 변화는 성저십리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연산군은 승정원·병조·공조·한성부·내관 등으로 하여금 도성 밖에 출입 금지 구역을 정하여 금표를 세우도록 했다. 금표에는 “이 안으로 들어간 자는 기뢰제서울로 참한다[入此內者 棄毀制書律斬].”라고 쓰도록 했고,<sup>69)</sup> 中外에 효유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그리고 天使가 올 경우 길가에 세운 標旌은 철거하도록 했다. 이어서 전곳·홍제원·연희궁 부근에서 고기잡이 금지를 거듭 금지하며, 여기에도 금표를 세워 위반하는 사람은 制書有違律로 논하도록 했다.<sup>70)</sup>

68)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갑진.

69) 실제 고양시 대자동에서 발견된 금표에는 “禁標內犯入者論棄毀制書律處斬”이라고 새겨져 있다(정동일, 「燕山君 禁標碑 研究 -大慈洞 禁標碑를 中心으로-, 『한성사학』 8, 1996).

연산군 10년 7월 병오일 연산군은 장의문 밖에 세운 금표에 따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모두 흥제원 밖으로 쫓아내도록 했다. 동소문 밖으로도 신료들은 狄逾嶺[미아리고개]·다야원과 이회양의 무덤 뒷산을 거쳐 寶燈寺까지 금표를 세우자고 했는데, 연산군은 지금 철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大路를 따라 금표를 세우도록 했다. 그리고 살하리[沙乙河里] 동리 어귀에 警守鋪를 만들어 사람의 왕래를 감찰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금표 밖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금표를 넘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했다.<sup>71)</sup>

금표가 동소문 밖에도 설치되고 기존 大路의 출입을 금지함에 따라 동소문은 폐쇄하고 기존 길을 대체할 다른 길을 마련하도록 했다.<sup>72)</sup> 그리고 편입된 지역의 모든 곳에 목책을 두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목책을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출입 금지 지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sup>73)</sup> 폐쇄한 길에도 큰 돌을 세우고 “이 길은 통행을 금지했고, (새로운 길은) ○○으로 옮겼다[此路禁行 已移於某處].”라고 써서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하도록 했다.<sup>74)</sup>

70)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을사. 制書有違律은 官吏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常人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法官들이 왕의 교지로 금한 법령을 범한 자를 으레 제서유위율로 처벌하자, 세종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世宗實錄』 권25, 세종 6년 8월 계해). 따라서 이후 제서유위율 적용의 하한은 軍役을 수행하는 사람까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연산군이 제서유위율을 사실상 全人民에게 적용한 것은 그만큼 엄한 형벌을 주겠다는 것 혹은 왕토 사상에 의해 모든 사람을 자신의 신료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棄毀制書律은 교지를 훼손한 항목이기에 그 적용 대상은 제서유위율과 같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궤제서율 적용도 동일하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71)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병오. 이때 活人署도 철거하도록 했는데, 진제장의 역할을 하던 흥제원·보제원 또한 함께 철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72)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정미; 기유.

73)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정미.

74)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기유. 현재 이 비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

철거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확대·진행 되자 遷撫廳을 설치하여 撤家人의 안정적인 이주를 담당하도록 했다.<sup>75)</sup> 같은 날 한성부는 撤家人에게 노원·청파 두 역의 馬位田 및 公·私田을 절급하도록 했는데, 천무청의 출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천무청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간헐적으로 撤家人에게 약간의 보상을 주는 경우가 확인된다.<sup>76)</sup> 이로써 보았을 때 규정에 따른 보상 규모 책정, 새롭게 절급 해줄 땅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동시다발적 철거로 인해 철거 인력이 부족하자, 水軍 1천명을 동원하여 조지서 및 그 인근 가옥을 철거하도록 했고, 동소문을 폐쇄한 후 齊安大君의 집 대문부터 육한의 집, 사섬시 앞 石橋, 景陽門을 거쳐 담을 쌓도록 했다.<sup>77)</sup> 다음날인 기유일, 우찬성 이계동과 공조판서 한사문이 성균관동·흥덕사동·제안대군 집 앞과 彌沙里(현 미아리)·우이洞(현 우이동)의 산 사이에 목책을 설치할 만한 곳을 圖示하여 보고했고,<sup>78)</sup> 그 다음날 연산군은 이계동 등이 작성한 『昌慶宮圖』·『東邊築牆圖』·『東小門外禁限圖』 등을 근거로 창경궁의 景陽·建陽 등 여러 門 및 승정원·書筵廳 등을 지키는 군사를 다 내보내고 宣仁門 안에 담을 가로로 쌓도록 했다. 그리고 春苑 동쪽부터 시작하여 동소문까지 이어지도록 담을 쌓고 그 안에 문을 만들어서 內苑으로 통하도록 했다. 동소문 밖에도 담을 이어지도록 했고, 금표를 따라 거주하도록 했던 人家들도 담을 쌓아서 內苑 쪽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이때 동소문 밖 금표 범위를 확장하여 安庵寺도 철거하도록 했는데, 이는 북한산 쪽의 현 정릉·미아에서 남쪽으로 확대된 것이었다.<sup>79)</sup>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75)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무신.

76) 철거에 대한 보상과 관련 본고 4장 참조.

77)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기유.

78)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경술.

79)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신해. 이후 연산군은 黃阜로부터 東籍田의

창덕궁 동쪽부터 시작된 인가 철거 및 출입 금지 조치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경복궁 서쪽, 경복궁·창덕궁 북쪽으로 확대되었고, 도성을 넘어 서북쪽으로는 현 홍제동, 동북쪽으로는 현 우이동·안암동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북한산·도봉산 영역의 대략 3시 방향부터 7시 방향까지 사실상 궁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동소문은 폐쇄되었고, 동소문부터 철원-함흥으로 이어지던 大路 또한 폐쇄·변경되면서, 금표 설치 지역이 빠르게 도성을 벗어나 성저십리로 확대되었다.

금표 설치 지역은 서쪽으로도 뻗어나갔다. 경복궁 서북쪽에서 부암동으로 넘어가는 길부터 시작된 서북쪽에서의 확대는 세검정 쪽과 홍제원 쪽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창의문으로 통하는 길 대신 延曙驛(현 역촌역과 구산역 사이)에서 沙峴(모래내고개, 현 무악재)을 넘어 연희궁-阿耳峴(현 아현동)-돈의문으로 길을 사용하도록 했다.<sup>80)</sup> 이후 沙峴을 막고 새로운 길을 정하도록 했는데,<sup>81)</sup> 이로 인해 현 은평구에서 홍제역을 지나 무악재를 넘어 서대문을 통해 들어오는 길이 막혔다. 이는 곧 이 지역까지 금표가 확대됨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연산군 10년 8월 6일, 이계동·민효증 등은 서쪽의 새 길을 답사하여, 嘉麟院-昌敬陵 남쪽-幸州의 길과 합하여 금표를 세우고, 북쪽은 達峴을 기준으로 산언덕이 끊어진 곳은 모두 목책을 설치하고 그 안의 인가를 모두 철거하며 田地도 아울러 금지하도록 했다.<sup>82)</sup> 다음날 연산군은 경기감사 안윤

---

북쪽 재[峴]까지, 祭壇 옆을 지나 普濟院 앞 川까지, 安庵 북쪽 산중턱을 지나 도성까지 금표를 세웠다(『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신사).

80)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을묘.

81)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임술.

82)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계해. 達峴은 북한산을 가로질러 현 송추(경기도 양주시 장흥면)로 넘어가는 고개로 추정된다. 嘉麟院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같은 날 史論에서 “서쪽 금표는 德水로부터 서울까지 그 거리가 30리였으나, 왕이 좁다 하여 다시 넓히도록 한 것이다.”라는 것과 “왕봉폐현은 곧

덕과 이계동 등을 명소하여 『西禁標圖』를 보여주고, 왕도사상을 언급하며 금표 구역을 더욱 멀리 설정하라고 했다. 그리고 더불어 창경릉의 수호군도 금표 밖으로 이주시키고, 모화관 아래 목책을 설치하여 行幸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출입을 일절 금지시켰다.<sup>83)</sup> 그리고 北郊가 금표 안에 들어가자 북교의 제단을 옮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행하도록 했는데 이후 제삿날이면 모두 南郊에서 거행했다는 것으로 보아,<sup>84)</sup> 북교 제단은 사실상 폐지되었고 북교의 제사는 모두 남교에서 실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미처 수확을 다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내쫓도록 하니 사람들이 울부짖었다[禾稼熟未及刈 遽令驅出 人人號哭].”라는 기록이나, “금표의 한계가 어찌 그리도 광대한가? 荒田이 어찌 그리도 많은가[禁限何其太廣耶 荒田何其太多耶]?”라는 말이 퍼져나가자 연산군이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三族을 멸하라’라고 했다는 기록 등을 보았을 때, 도성과 성저십리의 주민 모두 창덕궁 동편부터 시작되었던 금표 설치가 자신에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sup>85)</sup> 연산군 8년경부터 시작된 인가 철거 및 출입 금지 조치가 연산군 약 2년 만에 도성을 넘어 도성으로부터 30리 반경을 넘어가기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민심의 불만을 파악한 연산군은 대제학 김감과 직제학 강흔을 불러 금표를 세우는 까닭을 알리는 글을 짓도록 했고, 다음날 김감과 강흔의 글을 본 연산군은 의정부에게 이대로 효유하라고 했다.<sup>86)</sup> 이에 따르면, 연산군

---

행주이다. 현 남쪽 15리에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고양군, 고적.)”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계동 등은 창릉천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며, 연산군은 그보다 더 넓히라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83)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갑자.

84)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갑자.

85)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계해; 갑자. 이때 대신들은 三族을 멸하는 법은 그 실제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연산군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삼족을 멸해야 한다고 했다.

은 도성을 내려다보는 것을 금지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 수목을 베며 궁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금표를 넓히는 것이며, 도성 밖 동·서로 금표를 세워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봄·가을 사냥과 군사 조련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옥이 철거당하고 田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안타깝지만 온 나라 안은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興奪은 위에 있는 것이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신의 사유물로 여겨 국가의 뜻에 불만을 갖는다고 했다. 그리고 위의 뜻에 불만을 갖는 것은 법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부자 간 연좌제를 적용하여 陵慢하는 풍습을 끊어버리겠다고 했다.

이러한 연산군의 실시 근거와 사상적 당위성은 일순간에 떠올린 것이 아니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후원을 확장할 때부터 관료들의 반대 논리에 하나씩 대응하면서 하나씩 쌓아올린 것이었다. 여기서 추가된 것은 군사 훈련 및 사냥을 위해 도성 밖의 공간이 필요하며, 그 안에 야생 동물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87)</sup> 이로 인해 금표는 경기 북부와 한강 이남까지 뻗어나갔다.<sup>88)</sup>

## 2. 內禁標와 궁궐의 확장

금표 영역이 도성의 동·서쪽 성저십리로 확대됨과 동시에 도성 내부의 변화 또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연산군은 南賓廳 앞에 담을 쌓고 문을 만들고 그 개폐는 안쪽에서만 하도록 했고, 빈청 뒷담도 더 높게 쌓

86)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을축; 병인.

87) 야생 동물이 줄어 군대를 동원해도 잡기 어렵다는 어려움은 태종 대부터 제기되고 있었다(『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윤5월 갑자; 『文宗實錄』 권5, 문종 1년 1월 경술).

88) 도성 밖으로의 금표 확장 논리 성립 과정과 성저십리를 넘어간 금표 설치의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도록 했다.<sup>89)</sup> 이 조치들은 궁에 들어온 신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점차 줄이는 동시에 궁 안쪽 출입을 통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궁의 확대는 곧 연산군의 사적 영역 확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달 무진일 연산군은 정업원 부근의 未撤去 인가를 당일 증으로 모두 철거하고 사람들을 쫓아내도록 했고, 西北衛將所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할 할 때까지 요급문 밖 군영으로 옮기도록 했다.<sup>90)</sup> 이로써 현 가회동 지역이 疏開되면서 경복궁부터 창덕궁까지 하나로 연결되다시피 했다.<sup>91)</sup>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기 철거된 경복궁 서쪽부터 경복궁~가회동~창덕궁~현 혜화동을 지나 동소문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북악산에서 퇴계로까지, 그리고 종묘 왼쪽의 현 종로1·2·3·4가동 일부와 창덕궁 오른쪽의 현 이화동, 종묘 오른쪽의 현 종로5·6가동 일부를 포함한 거대한 궁궐 영역이 만들어졌다.

연산군은 이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禁墻을 쌓고자 했는데, 아마도 궁궐 영역을 확정지으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담장 축조는 수리도감에서 담당했고, 군사 3천명으로는 基石을 나르는 데 부족하니 煙戶軍을 추가 배정하고 외방의 石工도 징집하자는 데서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다.<sup>92)</sup> 서쪽 금장 터를 직접 시찰한 연산군은 금장 높이를 3身長으로 하고, 문 2개를 내도록 하며(廣慶門·陽華門), 外人들이 바라볼 수 없도록 이세좌의 집

89)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을축. 여기서 남빈청과 빈청은 창덕궁의 빈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90)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무진.

91) 연산군은 星宿廳洞 어귀에 성을 쌓고 문을 내고, 임승재의 집 북쪽에도 문을 만들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했다(『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2월 무인). 전까지는 성수청의 위치와 정업원의 위치, 그리고 남쪽으로 문을 내어 임승재의 집 북쪽과 연결시켰다는 점을 볼 때, 현 삼청파출소 북부 지역이 소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아래쪽은 임승재와 같은 충신들 위주로 거주할 뿐 대부분의 인가는 철거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92)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병자.

북쪽 높은 언덕에 수목을 많이 심으라고 했다.<sup>93)</sup>

연산군 10년 11월 정해일 연산군은 梨峴에 세우라고 했던 廣慶門에서 바라보이는 곳의 집들을 모두 철거하라고 했으나 아직 문이 완성되지 못했다면서 蜆내에서 바라보이는 곳을 모두 철거하도록 했다.<sup>94)</sup> 여기서 蜆내를 어디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門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현과 가까운 창경궁 홍화문이나 명정문에서 바라보이는 곳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달 경자일 연산군의 명에 따라 승지 권균·이충순·강흔과 내관 김자원이 동쪽 담장 터를 살펴보고 와서 齊安大君의 집 대문 건너편 끝의 沿路로부터 타락산 이점의 집 위 바위까지 1천 60척이라고 보고했고, 연산군은 여기에 담을 쌓으라고 하면서 궁 담장의 예에 따라 동·서 담장으로 부터 100자 안의 인가를 철거시켰다.<sup>95)</sup>

연산군 10년 12월 기사일 연산군은 동·서 禁牆 대신 경복궁 성 높이로 城을 쌓고, 경복궁 서쪽 가시 올타리는 궁성 서쪽 모서리부터 인왕산까지 물려서 치고, 도성 밖 동·서 금표는 목책 대신 담으로 쌓으라고 했다.<sup>96)</sup> 여기서 동·서 금표는 성으로 된 도성 안쪽의 금표(內禁標)와 담으로 된 도성 바깥의 금표(外禁標)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sup>97)</sup> 내금표를 城으로 쌓도록 하면서 築城司를 假設했고, 坊里軍에서 三南의 築城軍 동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높이를 경복궁 높이인 11尺로 맞추기 위해 평지는 4尺을 더하고 산지는 4尺을 줄였고, 석재는 동서남북 각각 造山·沙峴·南小

93)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기묘. 이후 연산군은 담 높이를 4丈으로 하고 내년 봄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안으로 마치라고 했다(『燕山君日記』 권56, 연산 10년 10월 병인).

94) 『燕山君日記』 권56, 연산 10년 11월 정해.

95) 『燕山君日記』 권56, 연산 10년 11월 경자; 『燕山君日記』 권56, 연산 10년 11월 계축.

96) 『燕山君日記』 권56, 연산 10년 12월 기사.

97) 외금표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인해 전 구역을 담장으로 쌓지 못하고, 목책을 두르거나 길을 막는 방식으로 금표 영역을 표기했다.

門洞·仁王山에서 뜨도록 했다.<sup>98)</sup>

연산군 11년 1월 계사일, 施惠廳 당상 임유경·심광보 등의 제안에 따라 궁의 남·동쪽 인가를 더 철거하여 담을 확장하여 쌓도록 했다.<sup>99)</sup> 두 달 후 연산군은 직접 경회루에 올라가 도성을 조망하면서 금표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公廩과 인가 수를 조사했다.<sup>100)</sup> 이로 인해 궁궐의 더욱 넓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은 내금표 동쪽이 좁다하여 돈화문 밖 좌우 행랑과 인접한 인가를 모두 철거시키고, 軍營의 하마비를 경계로 삼아 關門을 두도록 했다.<sup>101)</sup>

이 조치로 궁의 영역이 오늘날 종로 쪽에 닿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날 실록 기록 따르면 이때부터 도성 내 인심이 흉흉하여 ‘성안의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崇仁門<sup>102)</sup>·돈의문을 꺾문으로 삼을 것이니, 오래 갈 계획이 아니다(盡逐城中居人 以崇仁敦義門爲關門 無久安之計).’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한다. 종로의 행랑은 당시 市廛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종로 행랑이 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도성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은 당시 민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으며, ‘오래 갈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은 당시 민심이 한계에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며칠 후 연산

98) 『燕山君日記』 권56, 연산 10년 12월 신미; 『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1월 경인. 이때 축성군은 경상도·전라도는 20결에 1夫, 충청도는 25결에 1부를 동원했는데, 충청도는 재목까지 운수했기 때문이었다. 도성·경기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요인과 전국의 인민이 왕성을 건립한다는 이념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9) 『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1월 계사.

100) 『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3월 을사.

101) 『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6월 병자.

102) 여기서 승인문은 흥인문을 말한다. 兵政에 흥인문을 승인문으로 잘못 써서 인쇄했던 것으로 보아(『世祖實錄』 권22, 세조 6년 10월 임자), 당시 세간에서는 동대문을 가리키는 말로 승인문도 사용되었던 것 같다.

군은 도성 내 좌·우 행랑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두 내보내고 창고로 만들며 행랑 처마 끝을 따라 담을 쌓고, 그 바깥의 인가를 철거하여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만들도록 했다.<sup>103)</sup> 이로 인해 좌·우 행랑부터 창덕궁 하마비까지 궁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sup>104)</sup>

다음은 내금표 서쪽 지역을 살펴보자. 연산군 11년 7월 을사일, 연산군은 경복궁 서쪽 새로 쌓은 성[景福宮西新城]으로부터 150尺 안에 사는 인가를 모두 철거했다.<sup>105)</sup> 몇 달 후, 연산군은 금표를 세웠음에도 범하는 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궁성과 인가가 근접해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성터를 동·서로 더 확장하겠다고 했다. 연산군은 동쪽은 후원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터를 확장했으며, 타락산 위에도 담을 쌓아 사람들의 시야를 가렸다. 서쪽은 관상감 고개로부터 예빈시 모퉁이의 왼쪽과 경복궁 성의 서남 모퉁이부터 똑바로 서편으로 선을 그어 그 아래쪽 인가를 철거하도록 했는데, 이는 西部의 대부분으로 현 안국역, 승례문, 청운효자동(추정)을 꼭지점으로 삼각형을 그렸을 때 그 안에 포함되는 지역을 가리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더불어 종묘와 인접한 인가를 연지동 큰 길, 창덕궁 동행랑, 종로를 기준으로 모두 철거했다.<sup>106)</sup> 이때 도성 내부의 2/3 이상이

103) 『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6월 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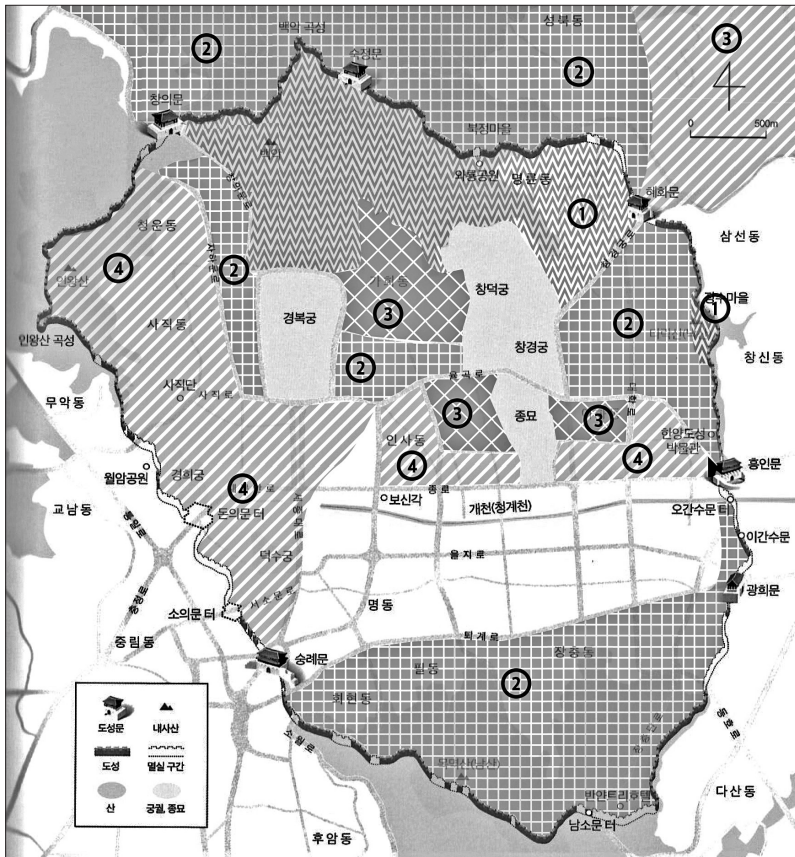
104) 호조 판서 이계남이鐘樓부터 창덕궁 하마비까지의 땅이 창고로 만들기 적합하지 않으니興淸의 부모들에게 불하하자고 했는데 연산군은 수락하지 않았고, 철거한 연지동 인가 끝에 하마비를 세웠다(『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7월 신해; 『燕山君日記』 권60, 연산 11년 11월 갑오).

105) 『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7월 을사.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북쪽으로西山까지 標를 세우고 인가를 철거시켰다(『燕山君日記』 권59, 연산 11년 9월 무술).西山은 현 도봉산과 開明山 사이에 있는 산으로 현 양주시 장흥면 부근에 해당한다. 이는 현 은평구 일대가 사실상 소개되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106) 『燕山君日記』 권60. 연산 11년 11월 기해. 곧이어 추가로 경복궁 서문과 새로 쌓은 서쪽 城까지 일직선으로 금표를 세우고 인물을 쫓아내고, 典醫監洞(현 종로구 견지동 일대)의 인가도 철거시켰다(『燕山君日記』 권60, 연산 11년 12월 임자).

금표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된다.<sup>107)</sup> 그 이후 또 다시, 연산군은 직접 西新城을 돌아보고 영추문 북편에서 풍저창 북편을 거쳐 수성궁 서쪽까지 축조하도록 했다.<sup>108)</sup>

연산군代 도성 내 금표 설치 과정 및 설치 지역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범례 : ① 연산군 9년 11월경의 금표 설치 지역 ② 연산군 10년 7월경의 금표 설치 지역  
 ③ 연산군 10년 8월경의 금표 설치 지역 ④ 연산군 11년 11월경의 금표 설치 지역  
 출처 : 홍순민, 『홍순민의 한양읽기 도성』, 놀와, 2017, 37쪽의 지도를 저본으로 사용했음.

궁이 확장되면서 그 궁을 가리기 위한 조치가 행해졌고, 궁 확장에 따른 부분적인 철거도 계속 진행되었다. 확장된 궁의 동·서쪽 부근 인가 철거를 재촉한 연산군은 모화관 앞 盤松池 아래부터 청계천[乾川] 언덕까지 싸리 울타리를 설치했고,<sup>109)</sup> 축조한 내금표 위로 가시울타리를 설치했다.<sup>110)</sup> 이는 새로 쌓은 궁 내부를 보지 못하도록 도성 내 고지대에 울타리를 쳐서 시야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또, 화재 발생 우려를 근거로 내수사 근방의 인가를 철거했고, 聯芳院(장악원)의 동·서·남 담장 아래 인가도 모두 철거했다.<sup>111)</sup> 무너진 성벽 사이로 보이는 人家와 東學 등도 철거했는데,<sup>112)</sup> 문을 내거나 위치를 바꾸는 등으로 인해 성벽이나 성벽 중간을 무너뜨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이 밖에 앞의 사례들처럼 궁과 인접하거나 내려다볼 수 있는 곳 혹은 연산군의 지시에 의한 가옥 철거,<sup>113)</sup> 가시덤

107) 같은 날 실록 기사에 뜯기는 집이 수만호라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108)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1월 기축. 오늘날 청운효자동과 부암동 일대이다. 이후 이 新城에서부터 惠安殿 동편 담 아래로 하여 남쪽 新禁標까지 성을 쌓고 문을 만들도록 했는데(『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2월 병인). 이때의 해안전은 경복궁 서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3월 임진), 이후 창덕궁 동쪽으로 신축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6월 경신).

109) 『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3월 을사.

110) 『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5월 을미.

111)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1월 경인;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2월 을축. 장악원은 현 을지로입구역 부근이다. 이는 인가 철거가 부분적으로는 청계천 남쪽 현 을지로 부근까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쪽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언제든 집이 철거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12) 『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4월 계유; 무인. 이때 철거한 건물은 東學 이외에도 약 159채였다.

113) 『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6월 경신; 임신; 『燕山君日記』 권63, 연산 12년 8월 임술. 사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미 주민을 소개한 지역에 대한 건물 철거인지, 신규 편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건물 철거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료도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것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도성의 경관 변화가 급격히

굴 없기,<sup>114)</sup> 담장 축조,<sup>115)</sup> 衙門 이동 및 각종 시설 철거<sup>116)</sup> 등이 시행되었다.

또, 도성 밖에 금표가 추가되면서 타락산·목멱산·인왕산은 도성 내부를 바라보는 것 뿐 아니라 도성 밖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집도 철거하도록 했고, 도성 성벽을 따라 적당한 간격을 두고 담장을 쌓아서 도성 아래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했다.<sup>117)</sup> 이후 연산군은 남산·인왕산·타락산 뿐 아니라 도성 위에도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게 했고, 흥인문부터 수구문을 경유하여 남산 밑에 이르기까지 성 위에 가시울타리를 쳐서 성밖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sup>118)</sup>

궁의 확장과 함께 궁 내·외를 가리지 않고 약 30여 건의 건물 축조, 온돌 설치, 담장·행랑 설치 등이 계획되었는데, 이 모든 토목공사는 연산군이 직접 계획했던 것이었다.<sup>119)</sup> 이후 연산군이 재위하는 동안 도성은 공사판 그 자체였다. 이때 시행된 공사의 특징은 대규모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이궁 건설을 꼽을 수 있다. 연산군은 藏義門 밖 莊義寺 일대(현 세검정 부근)에 새로운 궁을 짓고자 했다.<sup>120)</sup>

---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114) 『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5월 병신; 『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5월 병신.

115) 『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5월 무자; 『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6월 경오; 『燕山君日記』 권63, 연산 12년 7월 기묘.

116) 아문 이동 및 시설 철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빙고 왼쪽으로 옮긴 동빙고(『燕山君日記』 권56, 연산 10년 10월 정축), 仁政門 西廊으로 이동한 승정원(『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3월 임인), 창덕궁으로 옮긴 報漏閣 및 樞轆한 簡儀臺(『燕山君日記』 권60, 연산 11년 11월 을사), 궁 밖으로 옮긴 내섬시, 혜민서로 옮긴 교서관·사재감, 중학으로 옮긴 사포서(『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1월 임인), 경주·안동 京邸로 옮긴 北平館(『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5월 무술), 보성 京邸로 옮긴 선공감(『燕山君日記』 권63, 연산 12년 8월 경술).

117)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경진.

118) 『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3월 을사.

119)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을유.



연산군은 수리도감으로 하여금 새로 지을 離宮 안으로 물을 흘려 각 침실을 거쳐 흘러 나가도록 했다.<sup>121)</sup> 수리도감은 터가 좁아서 300여 칸을 지을 수 있으며, 궁터가 흐르는 물보다 높아서 침실로 물을 보내기 어렵다고 했다.<sup>122)</sup> 그러자 연산군은 城山 인근의 浦水에 독을 쌓아서 물을 보내도록 했고, 이후 양화도부터 藏義門까지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왔다.<sup>123)</sup> 이 뿐 아니라, 연산군은 창덕궁 후원에 축조한 서충대, 경회루 등에도 못을 파거나 확장하고, 한강에서 배를 실어와 띄웠다.<sup>124)</sup> 후원에 인양전을 짓고 돌로 臺를 쌓는데 감독하는 인원만 100여 명에 역군은 수만 명이었던 데서,<sup>125)</sup> 당시 연산군이 벌였던 토목 공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 IV. 맺음말 : 사회 불안과 中宗反正

금표가 설치되면서부터 가옥 철거, 출입 금지, 금표 설치 이 3가지는

120) 『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7월 갑신. 이 밖에 소격서 부근과 장단 석벽에도 궁을 지었다(『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2월 갑자;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3월 정해).

121) 『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7월 정유.

122) 『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7월 무술. 이후 장의사를 철거하고 그 터를 이궁의 후원으로 삼았으며, 장의동 입구에 또 다른 이궁을 짓도록 했는데(『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2월 경진), 아마도 이때 지은 궁을 확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123)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2월 임자.

124)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2월 계축;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3월 정유; 정미. 西湖의 배를 못으로 이동하는 데 배 1척당 500여인 동원되어 성안이 영차[呼耶]하는 소리로 뒤덮였다는 것으로 보아(『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2월 정사), 당시 못의 규모와 배의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당시 후원은 화려함의 극치였다(『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4월 8일 정사). 연산군은 소격서동 이궁도 물을 흘려 보내도록 했다(『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2월 정묘).

125)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1월 신축.



선후와 상관없이 묶음으로 시행되었다. 해당 지역의 가옥들은 대부분 강제 수용 및 철거되었지만 연산군의 친·인척, 연산군의 총애를 받는 자, 연산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물 등의 경우에는 보상·이전·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경우는 휘순공주의 경우이다. 구수영의 4남 구문경과 혼인하게 되면서 연산군은 휘순공주에게 집을 지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人家를 상당수 강제 수용·철거했었다.<sup>126)</sup> 이후 平市署가 공주의 집과 가깝다는 이유로 평시서를 공주에게 주고 평시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했고, 결국 휘순공주의 두 집이 도성 내 금표 안에 들어가자 면포·정포 합 5천 필을 보상해줬다.<sup>127)</sup> 月山大君 집은 시가에 준하여[市准] 사삼시 면포 2,750필을 보상했으면서도 금표 안에 넣지 말도록 했는데,<sup>128)</sup> 아마도 월산대군의 처와 연산군과의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張淑容의 경우 집 세 채가 금표로 편입되자 하는 固城君의 집으로 대체해줬고, 나머지는 시가로 보상해줬다.<sup>129)</sup> 이러한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경우는 보상이 아닌 위로 차원에서 집 크기에 따라 大家 쌀 2석, 小家 쌀 1석을 주었을 뿐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보다 더욱 줄어 한 말 정도의 쌀만 내려줬다.<sup>130)</sup>

126) 『燕山君日記』 권42, 연산 8년 1월 신사; 『燕山君日記』 권43, 연산 8년 4월 갑인; 『燕山君日記』 권49, 연산 9년 3월 계유; 갑술; 병자.

127)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정축; 『燕山君日記』 권60, 연산 11년 11월 신축.

128)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경진;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9월 정유; 『燕山君日記』 권60, 연산 11년 11월 경자. 이 밖에 齊安大君, 南川君 李暻, 永春君 李楞, 雲水君 李孝誠, 安順王后의 동생인 韓恂, 沈溫의 손자였던 沈瀚 등이 시가에 준하여 보상받았다(『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병진; 『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2월 기미; 『燕山君日記』 권60, 연산 11년 12월 신해;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1월 무술; 『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2월 경진;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3월 기해).

129)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1월 무술; 경자.

철거되지 않고 수용된 가옥의 경우 자수궁·소격서 등을 옮기거나, 철거한 절의 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sup>131)</sup> 성균관의 경우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여 火棚·활쏘기·마상무예 등을 즐기는 장소로 이용되었고, 단오 날 연회 장소로 이용되면서 명륜당은 동·서벽이 헐렸고 동·서재는 철거되었다.<sup>132)</sup> 철거된 지역은 평평하게 닦아서 火山臺를 설치하기도 했고, 새로 선발한 운평 千數의 거주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sup>133)</sup> 금표로 편입된 공간은 연산군의 유희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sup>134)</sup>

장숙용은 다른 집을 받기 전, 그녀의 집이 다른 인가들과 인접해 있어 화재 우려가 있다면서 그녀의 집을 기준으로 사방 10자 안의 인가를 철거하도록 했었다.<sup>135)</sup> 장숙용과 인접해 살았던 사람들은 장숙용 때문에 집이 헐릴 위기에 처했다가, 3일 후 금표에 편입되어 집이 철거되었다. 가옥 철거 및 출입 금지 그리고 금표 설치로 이어졌던 수많은 사례 중 일부이지만, 며칠 만에 급격한 삶의 변화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당시 도성 민이 처해있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는 비단 일반 민들뿐 아니라 관료·종친들도 마찬가지였다. 대체해 준다고 하지만 자신의 집이 강제 수용되어 왕의 후궁이나 聚紅院에 속한 여성들에게 불하되거나 사실상 강제 매매 되었던 관료·종친들 또한 부지기수였다.<sup>136)</sup> 南川君 李靖은 동대문

130)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병진;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기미;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1월 경인.

131)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신해; 을묘; 정사. 다른 공간을 제공받지 못한 중들은 다른 절로 들어가도록 했다.

132) 『燕山君日記』 권54, 연산 10년 7월 을묘;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갑술; 『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1월 정해; 『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4월 기사.

133) 『燕山君日記』 권56, 연산 10년 11월 정해; 『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6월 기미.

134) 『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3월 계사.

135)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1월 을미.

136) 연산군은 興淸樂의 부모를 모두 상경시켰고, 한성부로 하여금 크기를 헤아려 집을 내려주도록 했다(『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7월 신해).

밖에 있던 자신의 집 3채를 자발적으로 바쳤는데,<sup>137)</sup> 이는 강제수용·철거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바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당시 사회분위기와 언제 집이 철거 될지 모른다는 것은 당시 도성 민들의 근본적인 근심이자 불안이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창덕궁 동편 철거, 서쪽 금장 축조할 곳처럼 연산군이 직접 둘러 볼 때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일정 구역 밖으로 내보냈다. 요금문 밖 담장 쌓는 곳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 숙장문과 돈화문을 즉시 닫고, 입직하는 군사를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서운관 재[岨]로부터 濟生院 洞口, 虛屏門, 濕洞, 宗簿寺, 儀賓府 근처의 거민은 빠짐없이 찾아 일정 구역 밖으로 내보냈다.<sup>138)</sup> 이런 일이 불시에 반복되었기에 도성 민들은 늘 긴장하고 지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거민들은 땅에 엎드리거나 한성부 오부의 관원들로부터 매를 맞아가며 쫓겨났다.<sup>139)</sup> 오늘 疏開令이 없으면 그 뿐일 뿐, 내일도 소개령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개는 금표 설치와 마찬가지로 연산군이 스스로를 인민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산군은 밤의 微行을 위해 대궐 안팎의 순찰(巡緝)을 없앴는데,<sup>140)</sup> 이 또한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도성 내 치안 유지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궁의 영역이 넓어지고 순찰 인원 또한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陽華門 화재 사건이었다. 연산군 11년 8월 기묘일 밤,

137)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8월 경진.

138)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9월 임진. 금표 설치를 위한 연산군의 친림과 그 때마다 이뤄진 일시적인 疏開 사례는 다음과 같다. 『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3월 기축; 임진;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1월 기축.

139)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1월 기축; 『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6월 임신.

140) 『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5월 병술.

연회가 끝난 후 양화문에서 큰 화재가 일어 長廊 40칸을 태웠는데, 불을 끄려는 사람이 없었다.<sup>141)</sup> 修城禁火司를 비롯한 도성의 소방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궁의 영역이 확장되고, 토목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소개령이 불시에 내려지던 도성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경관을 보았을까? 바뀐 도성의 모습과 더불어 도성의 사람들도 변했다. 연산군의 가옥 철거로 도성에서 사람들이 쫓겨났다. 이와 반대로 聚紅院 설치 및 토목공사 인력 징발로 새로운 사람들이 도성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성의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보았다. 물론 그 타인이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또한 갖고 있었다.

도성의 사람들이 본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이었다.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된 토목공사로 인해 도성 사람들 및 역군으로 징발되어 온 사람들의 사망이 이어졌다.<sup>142)</sup> 이들의 시체는 거리에 쌓였고, 굶어죽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길가에 사는 사람들은 집 앞에 시체가 있으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집 앞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도성 밖으로 옮겼다.<sup>143)</sup>

또, 연산군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各司 婢를 데려다가 諸院의 運平·興淸 소속 房婢로 삼으려 했는데, 史官은 ‘이로 인해 도성으로 수천 명이 모여 들었고, 어린아이를 업고 길에서 결식을 하고, 의탁할 곳이 없어 운중가에서 노숙했기에, 疫疾이 크게 퍼져 죽은 사람이 10에 7~8이었다.’라고 했다.<sup>144)</sup> 이러한 상황은 13일을 굶은 흥청의 房婢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望遠亭 부근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고, 이를 본 연산군은 房婢 중 가난한 자가 있으면 料米를 선지급하고 本邑에서 받아내도록 했다는 데

141) 『燕山君日記』 권59, 연산 11년 8월 기묘; 경진.

142) 『燕山君日記』 권56, 연산 10년 12월 기사.

143) 『燕山君日記』 권57, 연산 11년 3월 신묘.

144) 『燕山君日記』 권60, 연산 11년 11월 신축.

서 확인된다.<sup>145)</sup>

연산군은 한성부와 의금부로 하여금 거리를 자주 순행하여 시체를 버린 자가 있으면 장 1백에 처하고 그 시체를 스스로 회수해가도록 했는데,<sup>146)</sup> 이는 도성과 성저십리에 죽음이 일상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당시 사람들은 왕의 개인적 유희를 위해 삶이 급격히 변했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던 것이다.<sup>147)</sup>

전국 각지에서 선발되어 올라온 여성들의 경우 이를 기회로 생각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가족들과 이별하게 되면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경우도 있었다. 뽑혀 온 사람들은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들과 연락하여 나름의 대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망갔던 運平 松梢 月 등은 붙잡혀 처벌받았고, 그들의 처벌 장면을 운평들에게 보도록 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갈 때 재워주었던 사람들도 수감되었고, 도망간 자들의 부모들은 그 전후 사정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장 100에 처하고 모든 가족을 全家徙邊에 처했다.<sup>148)</sup> 검사복 한곤은 운평으로 뽑힌 첩과 연락하여 나름의 대처를 해보려고 했다.<sup>149)</sup> 한곤은 첩에게 “예쁘게 꾸

145) 『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5월 을사.

146)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1월 정해.

147) 지배는 기본적으로 인격에 대한 일련의 상습적 모욕이나 상해를 동반한다. 그 가운데서도 최악은 자신의 가족이 당하는 학대·고통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할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욕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단적·체계적으로 고통받는 모욕이 될 때, 그들이 꿈꾸는 복수는 집단적 차원의 문화적 생산물로 바뀔 수 있었다(제임스 C. 스콧, 앞의 책, 38쪽, 84쪽, 2020). 이렇게 볼 때 반정 직전까지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축적되었고, 이는 곧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고 판단된다.

148) 『燕山君日記』 권63, 연산 12년 8월 신유.

149) 이와 유사한 사례는 運平 笑眞珠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운평 소진주도 담을 넘어 남편과 사통했던 것이 발각되어 密威廳(當直廳)에서 국문 받았고, 그 부모·형제는 장 1백대에 처하고 각도에 나누어 全家徙邊시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소진주가 살던 고을은 혁파되었다(『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5

미지 말라. 예쁘게 꾸미면 반드시 뽑힐 것 아니냐?[勿爲冶容 冶容則被選 必矣]”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발각되었다. 연산군은 ‘국가의 公物 인 운평을 사유화했다’는 이유로, 한곤은 凌遲에 처하고, 그 부모는 장 1백에 처해 섬으로 전가사변하고, 자식 및 형제는 장 80에 충군시켰다.<sup>150)</sup> 광희·흥청·운평들로 하여금 집과 왕래하며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뽑힌 사람과 그 가족들 모두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산군을 견제할 장치들은 전무했다. 명 사신의 우려 내지 의문 또한 연산군을 막을 수 없었다. 연산군이 명[中朝] 사신이 모화관 근처 목책에 대해 물을 것을 걱정하자, 신료들은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평시에는 열병하고 사신이 오면 산대놀이(山臺雜戲)을 여니 이런 때는 목책을 잠시 철거했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설치하자고 답했다.<sup>151)</sup> 반대를 표하거나 표했던 사람은 모두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신료들은 반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왕이 명 사신을 걱정하고 신료들은 걱정할 것 없다고 답하고 있지만, 이는 연산군이 듣고 싶은 말을 신료들이 해준 것으로 명 사신 또한 연산군에겐 걱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도성과 성저십리는 왕의 유희를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sup>152)</sup> 다수의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었

월 병신).

150) 『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5월 병오; 무신; 『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6월 기미. 이때 속공된 한곤의 집은 앞서 집을 스스로 바쳤던 남천군 이쟁에게 돌아갔다(『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6월 을축).

151) 『燕山君日記』 권55, 연산 10년 9월 갑오.

152) 대표적인 사례는 瑞葱臺의 監役官인 假部將에 생원·진사들이 자발적으로 투입했던 것을 들 수 있다(『燕山君日記』 권60, 연산 11년 12월 경진). 기록에는 오래도록 뜻을 펴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긴 수험 생활로 인한 절박함이 작용

다. 연산군은 “田土·臧獲·空垆는 모두 대대로 전하는 것이지만, 왕의 땅과 왕의 신하가 아닌 것이 없다[凡土田臧獲及空垆雖其世傳 然莫非王土王臣].”라고 하면서 밭·집이 없는 사람이 구매하고자 하면 무조가 판매하고, 인가로 사용할 수 있는 빈 땅은 금표 안을 논하지 말고 撤家人에게 절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를 싫어하거나 원망하면 임금을 원망하는 죄로 처벌하겠다고 했다.<sup>153)</sup> 이러한 전교들이 내려올수록 사람들, 특히 田土·臧獲·空垆 등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욱 불안했을 것이다. 광대 공길이 正名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풍자하고, 거병하여 임금을 시해하자는 익명서가 증루 기둥에 붙는 등의 현상은 당시 민심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며,<sup>154)</sup> 연산군이 금표 안을 微行할 때 기습을 당할까 걱정하여 발두둑의 황새를 보고 놀라고, 朝官의 紗帽에 앞에는 忠 뒤에는 誠을 새겨 넣었던 것은 그러한 민심을 우려하는 연산군의 방어 기제였던 것이다.<sup>155)</sup>

구축된 사회 체계는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이는 곧 사회의 안정을 가져온다. 안정이 장기화되어 굳어버리면 사회가 경직되면서 보수화될 수 있으나, 사회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어느 정도의 미래 예측은 보장되어야 한다. 연산군 재위기, 특히 갑자사화를 전후로 한 연산군 후반부의 사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한 시기였고, 이러한 불안은 곧 민심이 바뀌었다는 것의 근거가 되어 중종반정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2021.06.24. 투고 / 2021.07.19. 심사완료 / 2021.07.28. 게재확정)

한 것으로 생각된다.

153) 『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5월 경진. 도적들이 도성 밖 금표 내부로 도망가도 추적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성과 경기의 치안이 나빠졌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산군은 私賤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자에 한해 금표 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154) 『燕山君日記』 권60, 연산 11년 12월 기묘; 『燕山君日記』 권61, 연산 12년 1월 무신.

155) 『燕山君日記』 권62, 연산 12년 5월 임인; 갑진.

[Abstract]

**Study on the Prohibited area installation and Changes  
in Capital's Cityscape during Yeonsangun's reign**

Shin, Dong-Hoon

From the beginning of his reign, Yeonsan-gun expanded its patronage and installed a prohibited area. The expansion of back garden of the palace started from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city.

Before and after the Gapjasahwa, the installation of gold stamps in the city walls expanded rapidly. Demolition of private houses was carried out on a large scale, and people were driven out. Prohibited area within the city wall was excluded from the southern part of Cheonggyecheon to the bottom of Namsan Mountain, and most of the city was incorporated into the Prohibited area.

Such a sudden establishment of prohibited areas caused house demolition and social unrest. The people of the city lived with anxiety that their houses might be demolished. Ultimately, this anxiety led to support for Jungjong restoration.

□ Keyword

Yeonsangun, Prohibited area(禁標), Capital Cityscape, back garden of the palace(後園), Jungjong restoration[中宗反正]



[참고문헌]

- 김 돈, 『조선중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9.
- 김 범, 『연산군(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 글항아리, 2010.
- \_\_\_\_\_, 『사회와 반정의 시대』, 역사의 아침, 2015.
- 제임스 C 스캇, 전상인 옮김,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후마니타스, 2020.
- 나영훈, 「조선초기 昌德宮의 경영과 위상 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 학위논문, 2011.
- 소순규, 「燕山君代 貢案改定の 방향과 辛酉貢案의 특징」, 『사학연구』 134, 2019.
- 손균의, 「연산군 대 亂言 사건을 통해 본 사회 기층의 정치의식」, 『민족문화연구』 73, 2016.
- 송용섭, 「연산군 초반 정치적 갈등에 대한 구조적 접근」, 『인문과학연구』 20, 2015.
- \_\_\_\_\_, 「연산군의 의례 및 가치 체계에 대한 파괴와 도덕적 권위로부터의 탈피」, 『사림』 68, 2019.
- 신동훈, 「조선 초기 국왕의 法 인식을 통해 본 對民 인식 -태종·세종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118, 2020.
- 윤대식, 「연산군(燕山君), 권력과 폭력 간 불안한 경계 짓기의 실패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1, 2017.
- 정동일, 「燕山君 禁標碑 研究」, 『한성사학』 8, 1996.
- 최선혜, 「연산군 시대 先王 世祖와 成宗에 대한 기억과 충돌」, 『서강인문논총』 35, 2012.